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
[서울동부지방법원, 2004.7.16, 2004고합185]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 이대연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이범래

【주문】

】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.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